

제22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사회복지
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
공포한다.

2022년 10 월 21 일

여 수 시 장

2022. 10. 21. 

여수시 조례 제1764호

붙임 여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 1부.

**여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**

여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를 삭제한다.

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(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) ① 시장은 『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』 제3조의2에 따라 “처우개선위원회”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제8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2. 제9조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
3. 제10조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

이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여수시의회 의원

2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담당과장

3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4.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

 가.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

 나.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

 다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

5.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

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11조(지원협의회의 설치)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「여수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협의회」(이하 「지원협의회」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 <p><u>② 지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</u></p> <p><u>1. 제8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2. 제10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3.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</u></p> <p><u>③ 지원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「여수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여수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<삭 제></u></p> <p><u>제12조(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시장은 『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』 제3조의2에 따라 「처우개선위원회」(이하 「위원회」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 <p><u>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</u></p>

심의한다.

1. 제8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
에 관한 사항

2. 제9조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
의 조사에 관한 사항

3. 제10조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
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
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

이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
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
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
서 호선한다.

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
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
촉한다.

1. 여수시의회 의원

2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
담당과장

3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
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4.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
람

가.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

체

나.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

다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

5.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

⑥ 그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『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』에 따른다.

제12조 ~ 제14조 (생략)

제13조 ~ 제15조 (현행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)